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「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」 소방청 훈령 제417호

◇ 제 · 개정 이유

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전략지휘관 인증평가 운영상 불일치 사항 개선 및 합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인증시험 무단결시자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타법 개정에 따른 자격인증교육 수료기준을 참고 규정을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 제17조제1항으로 수정함(제6조 및 제7조)
- 나. 종전의 전략현장지휘관 실기평가 미실시를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합하여 인증평가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함(제9조)
- 다. 종전의 실기평가를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만으로 실시하는 것을 평가지원 인력의 역할극을 통해 직접 현장지휘 상황을 조성하여 실시하는 평가방법을 추가함(제10조)
- 라. 전략현장지휘관 실기평가 합격기준을 만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(제10조)
- 마. 인증시험 접수 후 무단결시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결시하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가능토록 조항을 신설함(제13조)